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3월19일
 (11) 등록번호 10-1376004
 (24) 등록일자 2014년03월1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5/10 (2006.01) *B65D 5/4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53805
 (22) 출원일자 2012년05월21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5월21일
 (65) 공개번호 10-2013-0129730
 (43) 공개일자 2013년11월2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7191210 A
 JP3102811 U
 JP200830769 A
 JP2003252373 A

(73) 특허권자
유하정판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마당재길 28
 (72) 발명자
송의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59, 514동 1004호
 (이매동, 아름마을)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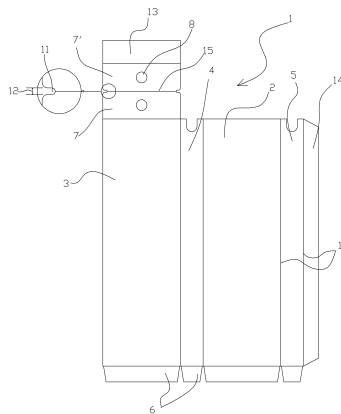
심사관 : 박균성

(54) 발명의 명칭 **포장박스**

(57) 요약

본 발명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배면의 상단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접철되는 제 1, 2 수직편과, 상기 제 1, 2 수직편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접이선 양측에는 종이 평량의 공차만큼 접이홈을 내측으로 대향지게 형성하여 제 1, 2 수직편을 밀착되도록 포개지게 접으면 일치상태로 접혀짐은 물론 접이선 양측으로 터짐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단정하고 미려한 상태로 접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 도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종이재질의 판지를 구획하여 배면(3), 우측면(5), 정면(2), 좌측면(4), 접착 날개(14)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각 면의 경계에 형성된 접이선(15)을 따라 사각 관체로 접어진 상태에서 접착 날개(14)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배면(3)의 내주면으로 접착하고, 상기 배면(3), 우측면(5), 정면(2), 좌측면(4)의 하부에는 하부 날개(6)가 각각 연장되어 직각으로 접혀져 포개진 상태에서 접착하며, 상기 배면 상단에는 수직방향을 향해 순차적으로 연장된 제 1, 2 수직편(7, 7')을 밀착되도록 포개지게 접은 포장박스(1)에 있어서,

상기 제 1, 2 수직편(7, 7') 사이 경계에 위치한 접이선(15)의 좌·우 양측에는 내측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종이 두께만큼 일부가 절단된 접이홈(11)을 대향지게 형성하여 제 1, 2 수직편(7, 7')을 밀착되게 접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배면 상단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접철되는 제 1, 2 수직편과, 상기 제 1, 2 수직편의 경계를 이루는 접이선 양측에는 종이 평량의 공차만큼 접이홈을 내측으로 대향지게 일정한 길이만큼 형성하여 제 1, 2 수직편을 밀착되도록 포개지게 접으면 일치상태로 접혀짐은 물론 접이선 양측으로 터짐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단정하고 미려한 상태로 접혀지는 포장박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 [0002] 일반적으로 포장박스는 특정 제품을 보통 부피가 큰 대형박스에 대량으로 수납하여 보관 및 운반하였다.
- [0003] 그러나 이렇게 수납되어 보관중인 제품들은 구매자나 판매자의 눈에 제대로 띄지않아 제품의 홍보 효과가 미비하며,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할 때에도 판매자가 제대로 제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 [0004] 따라서 최근에는 제품을 날개로 포장하여 보관 및 진열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박스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0005] 상기 포장박스는 도 1에서 도시한 것처럼 제품을 날개 포장이 가능하도록 부피가 작은 사각형상으로 배면(3), 우측면(5), 정면(2), 좌측면(4), 접착 날개(14)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각 면 사이 경계에 형성된 접이선(15)을 따라 접어진 상태에서 접착 날개(14)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배면(3)의 내주면으로 접착하여 사각 관체로 형성한다.
- [0006] 또한, 배면(3), 우측면(5), 정면(2), 좌측면(4)의 하부에는 하부 날개(6)가 연장되어 절곡되게 접혀져 밀폐하고 배면 상단에는 수직으로 연장되어 접철되는 제 1, 2 수직편(7, 7')과 상부편(13)이 순차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제 1, 2 수직편(7, 7')의 경계에 형성된 접이선(15)을 따라 포개지게 접은 다음 제 2 수직편(7')에서 연장된 상부편(13)을 재차 직각으로 접어 사각 관체의 상부를 개폐하도록 뚜껑을 형성한다.
- [0007] 한편, 포장박스(1) 중에서 제 1, 2 수직편(7, 7')을 접는 이유는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 길이공(8)을 형성하거나 또는 포장박스(1)에서 형상을 미려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 1, 2 수직편(7, 7')의 양측 일부에 절단선(10)을 형성하는 이유는 제 1, 2 수직편(7, 7')이 밀착되게 접었을 때 탄성력에 의해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0008] 그러나 제 1, 2 수직편(7, 7')의 경계에는 양측 일부에 한 줄로 형성된 절단선(10)이 일부 형성되고, 절단선(10) 사이에는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도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2 수직편(7, 7')을 접어서 포개진 정면에서 봤을 때 절단선(10)이 형성된 부분이 위로 솟아오르고, 제 1, 2 수직편(7, 7')이 일치하지않음은 물론 접었을 때 절단선(10) 주변에 터짐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0009] 따라서 제 1, 2 수직편(7, 7')이 형성된 대부분의 포장박스(1)에는 70 ~ 80% 이상 터짐현상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포장박스(1)의 외형이 지저분한 문제점이 있다.

[0010] 상기와 같이 제 1, 2 수직편(7, 7')을 접을 때 밀림현상과 터짐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접이선(15)을 따라 접으면 접이선(15) 양측에 대향지게 위치한 절단선(10)이 하나의 선으로 형성됨으로 인해 절단선(10)에 위치한 부분의 간격(공차)이 종이 두께보다 적어 제 1, 2 수직편(7, 7')을 밀착할 경우 상부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성질이 발생하여 절단선(10)과 연결부위 사이에는 상부로 밀어올리는 힘에 의해 터짐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1]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포장박스의 상단에서 수직으로 접혀지는 제 1, 2 수직편을 밀착되도록 포개지게 접을 때 제 1, 2 수직편의 양측에는 절단선을 하나의 선으로 형성하지않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 1, 2 수직편이 밀착되었을 때 밀림에 의한 터짐현상이 발생하지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2]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발명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포장박스의 배면 상단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포개지게 접철되는 제 1, 2 수직편의 경계를 이루는 접이선 양측에는 내측으로 대향지게 일정한 폭(종이 평량의 공차 두께만큼)으로 접이홈이 일체로 형성된 포장박스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0013]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포장박스의 배면 상부에서 연장된 제 1, 2 수직편을 밀착되게 포개지도록 접는 과정에서 밀림현상을 방지하여 밀착시 일치하도록 하고, 제 1, 2 수직편의 경계에 위치하는 접이선 양측으로 터짐 현상을 방지하여 미려함을 연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0014] 또한, 제 1, 2 수직편을 접었을 때 접히는 부위 및 양측이 상부방향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없애 불량률을 저하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도 1은 종래의 포장박스를 도시해 보인 정면도.

도 2는 종래의 포장박스에서 터짐 상태를 도시해 보인 사진.

도 3은 본 발명 포장박스를 도시해 보인 정면도.

도 4는 본 발명 포장박스에서 펼친 상태를 도시해 보인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 포장박스에서 접힌 상태를 도시해 보인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 포장박스에서 접힌 상태를 도시해 보인 사용상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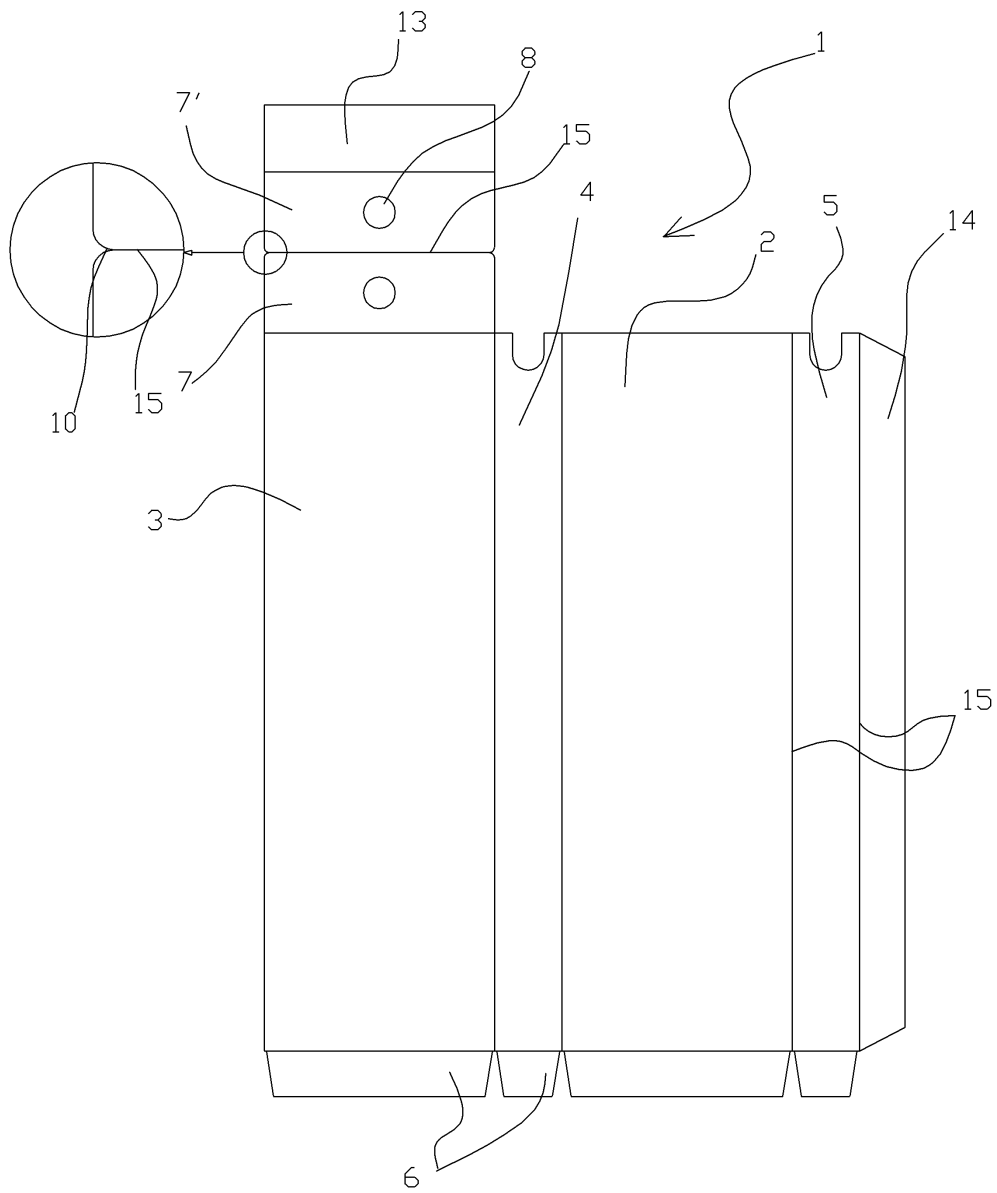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상기와 같은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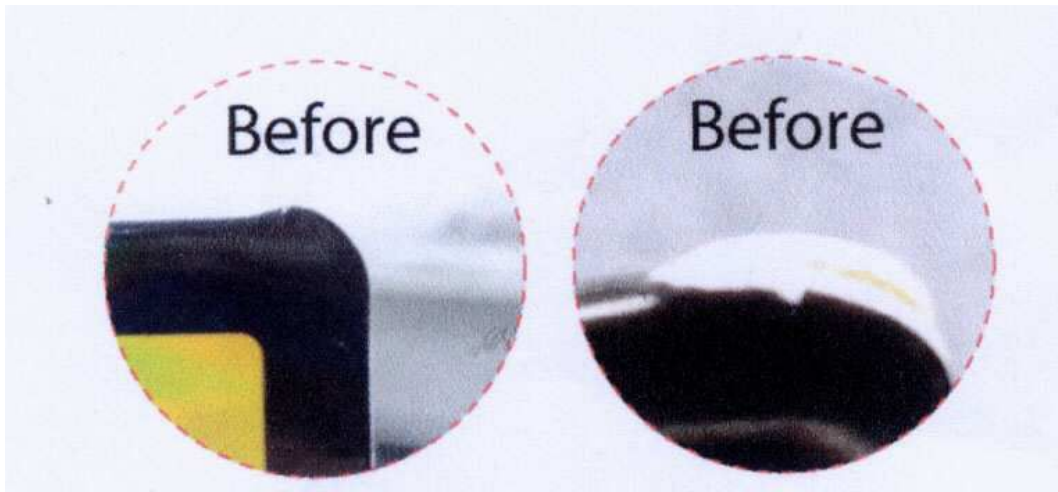
[0017] 도 3은 본 발명 포장박스를 도시해 보인 정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 포장박스에서 펼친 상태를 도시해 보인 사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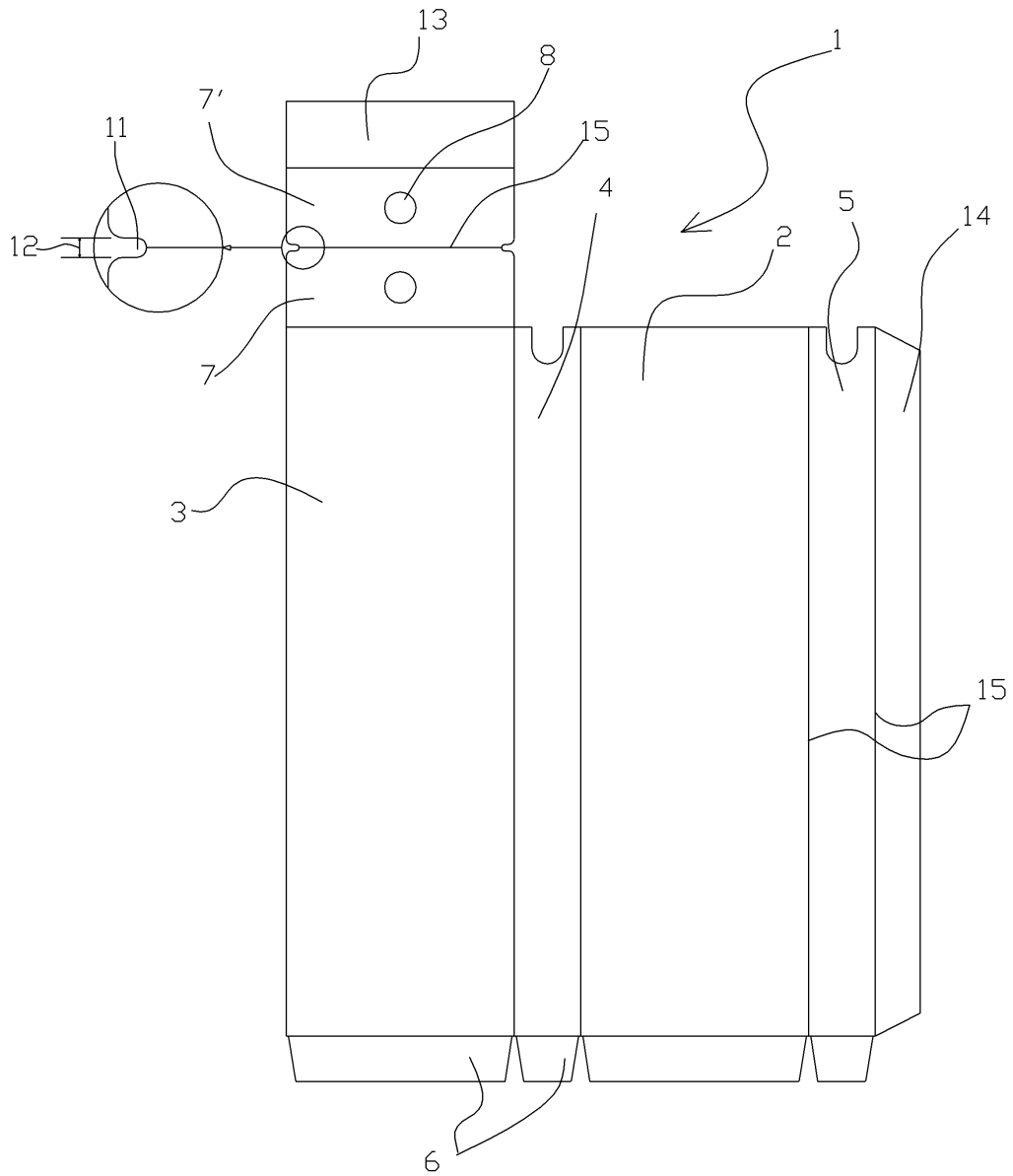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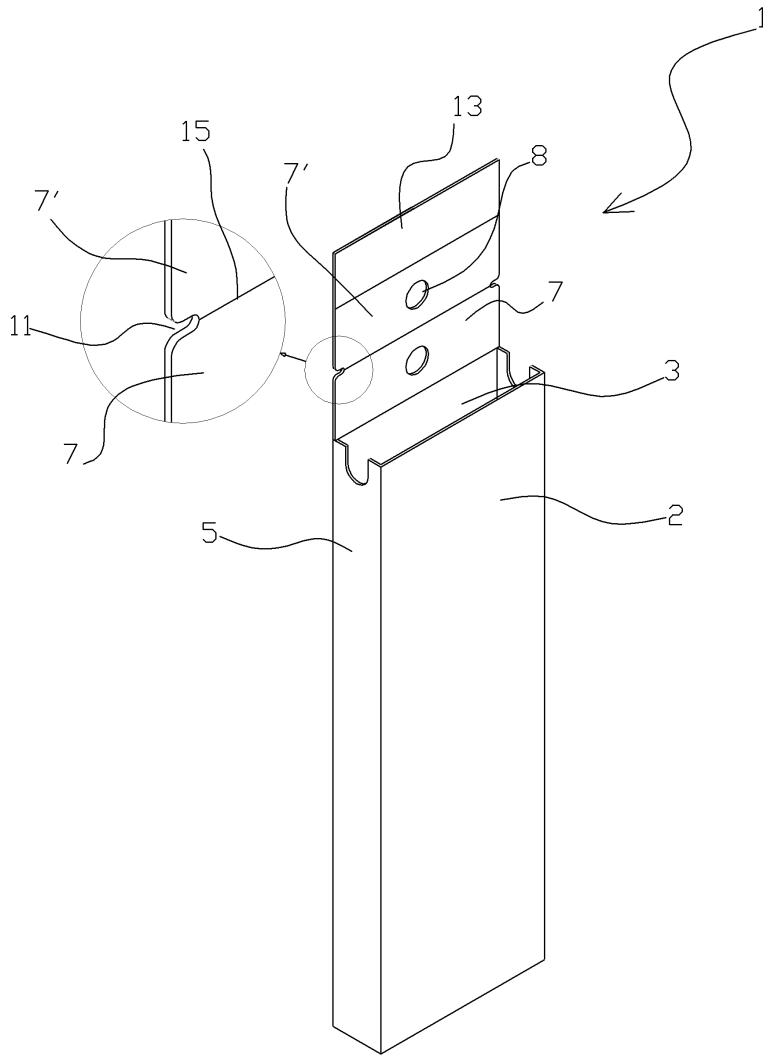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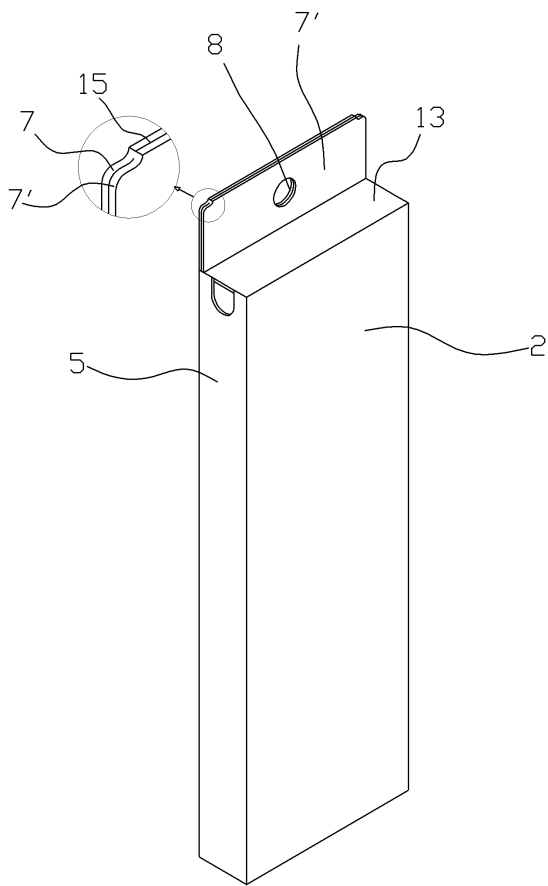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